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지역과 중앙의 협력을 보다 긴밀히 유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위원장을 맡는 체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한편,

회의에 참석하는 지방자치단체 위원의 참석 수준을 도지사급으로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고, 지역과 중앙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과학기술진흥협회의의 구성 및 운영(안 제11조)

지방과학기술진흥협회의의 위원장, 위원 구성 및 운영체계에 관한 변경사항을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하고”를 “공동으로 되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지방협회의의 위원장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차관(「정부조직법」 제31조제2항·제27조제3항·제41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산업통산부 및 고용노동부에 두는 본부장과 국무조정실 차장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4조제5항”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지방협회의의 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 “1급 또

는 1급 상당 공무원”을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협회의회의
위원장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공동
으로”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위원장이 부득이한”을 “위원장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중 어느 하나가 부득이한”으로, “지방협
회의회의 위원장이 미리”를 “나머지 한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며, 두 위원
장이 모두 부재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미리”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지방과학기술진흥협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략)	제11조(지방과학기술진흥협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협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1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시사와 지방과학기술진흥 관련 연구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② -----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 공동으로 되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과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 ----- ----- ----- ----- ----- ----
1.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과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장이 공동으로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가. 지방협회의 위원장이	2. -----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방협회의 심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공무원

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
시대위원회의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다. 지방협회의 위원장이
지방협회의 심의에 부치
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1급 또는 1급 상당 공무원

③ (생략)

④ 지방협회의 위원장은 지방
협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필
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요
구하는 경우에 지방협회를 소

과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 공동으로 -----

차관(「정부조직법」 제31
조제2항·제27조제3항·제41
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 및
고용노동부에 두는 본부장
과 국무조정실 차장을 포
함한다)

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4조제5항-----
----- 부위원장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장

③ (현행과 같음)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공동
으로 -----

집한다.

⑤ 지방협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협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 ⑩ (생략)

-----.

⑤ ----- 위원장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중 어느 하나가 부득이한 --- 나머지 한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며, 두 위원장이 모두 부재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

⑥ ~ ⑩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	
연 락 처	(044) 202 - 6734